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4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있어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 변경,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별표에 적용하는 규정을 해당 별표에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있어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 변경,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별표에 적용하는 규정을 해당 별표에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어선총톤수측정방법의 제외장소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여 해양수산부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개정)

나.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3조 개정)

다. 어선총톤수측정방법의 제외장소 반영(별표 4 제13호다목 신설)

어선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선내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 어선을 표준어선형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을 적용하여 건조하는 어선은 어선원의 복지설비 및 안전조업 준비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총톤수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7조제1항”을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으로, “발급신청시”를 “발급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총톤수”를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어선법 제22조”를 “「어선법」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단”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1), 2) 및 3)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어선법 시행규칙」(이 표에서 “규칙”이라고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1) 중 “강제어선 또는 합성수지 제어선”을 “강제어선, 알루미늄합금제 또는 강화플라스틱제어선”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1) 중 “강제어선 및 합성수지제어선”을 “강제어선, 알루미늄합금제 또는 강화플라스틱제어선”으로 하고, 같은 호 3) 중 “합성수지제어선”을 “강화플라스틱제어선”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규칙””을 “이 표에서 “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어선만재흡수선 및 복원성기준」”을 “「어선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자리수”를 각각 “자릿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호”를 “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계단부에 의하여 해당 장소의 높이가 높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단부보다 안쪽의 장소를 제외장소로 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1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단, 업종별 조업특성에 따른 표준어선형 설계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외장소의 범위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1) 선원실

2)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식당·조리실·휴게실 등을 말

한다)

3) 위생제실(욕실·변소·세탁실·병실 등을 말한다)

4)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

제3장 총톤수

별표 4 제14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제2층에 있는 갑판”을 “제2층에 있는 갑판”으로 한다.

4)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

별표 5 제1호 중 “규칙”을 “이 표에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2017-0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등”이라 한다)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규칙 제74조제4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서류 등의 제출자료)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국제톤수증서등”이라 한다)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p>	<p>제2조(서류 등의 제출자료)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 ----- ----- ----- 발급신청</p>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1.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신청과 동시에 규칙 제12조에 따른 총톤수 등의 측정을 신청한 경우

2.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경우

제3조(총톤수 등의 측정 생략) ①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총톤수 등의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이란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인”1969년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1969)”을 수락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같은 국가로부터 톤수측정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선박검사기관(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의 회원 또는 준회원에 한정한다), 「선박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해양항

시 -----

1. -----

-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이하 “총톤수 등”이라 한다) --

2. 「어선법」 제22조-----

제3조(총톤수 등의 측정 생략) ①

----- 지방해양항

만청과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생략)

제5조(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① 공단의 이사장은 총톤수 등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톤수측정 및 개측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제톤수증서등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산청-----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현황 관리 및 총톤수 등의 측정) ①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